

재 항 고 장

사건번호 2021고불항 2204호 (안양지청2021형제601호) 직무유기

재항고인 1. 제주 4.3사건 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대표 이선교)
(고발인) 2. 프리덤칼리지 장학회 (대표 전민정)

피재항고인 1. 박 상 기 (000000-0*****)
(피의자) 2. 성명불상 (000000-0*****)

위 피의자들에 대한 수원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2204호(수원지방
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 직무유기 사건에 관하여, 동 검찰
청 검사는 2022. 1. 19.자로 피의사실들에 대해서, 피의자들에 대한 각
하의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피의자들에 대한 위 항고기각 결정부
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합
니다.

(항고기각 통지는 2022. 1. 24. 송달됨)

재 항 고 취 지

위 재항고대상 결정(항고기각결정)을 취소하고, 피의자 박상기, 피의자 성
명불상에 대한 직무유기 피의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피의자들에 대한 항고기각의 요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기각 결정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여 위 항고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합니다) 검사는, 2018. 9. 3.경 제주 4·3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 및 이에 따른 2019. 8. 21.경 같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각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직무유기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의 2018. 9. 3.자 재심개시결정 및 2019. 8. 21.자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처분 검사 및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이하 ‘원처분 검사 등’이라 합니다)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검찰청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더라도 객관의무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권한을 보유한 피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죄를 한 것임에도 면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한 또다른 의식적인 방임에 해당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내용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당사자들의 관계 및 사안의 개요

피의자 박상기¹⁾가 2018. ~ 2019. 8.경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청법’ 제8조²⁾에 따른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의자 성명불상자는 2018. 9. 3. ~ 2019. 8. 21.경 당시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재심개시’ 및 ‘2019코8 등 형사보상 결정’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기에 검찰청법 제4조³⁾에 따른 공익의 대표자로서, 이들은 (일반국민을 대신하여)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청구 등을 구할 지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피의자들은 오○○ 등 18인의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① 2018. 9. 3.경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이 내려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의 재심사유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었음에도 아

1) 피의자 박상기는 2017. 7. 19 ~ 2019. 9. 8.의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의 직위에 있었습니다.

2)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3)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11. 2.]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② 피의자들은 또한 후속적으로 2019. 8. 21.경 위 오〇〇 등 18인에 대해 같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제주지방법원 2019코8 내지 25)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이기에 형사보상법에서 정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는 점, 그 보상금액 또한 형사보상법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하여 거액으로 결정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주게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다룰수 있는 내용이기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련법률 등에 의하더라도 객관의무에 따라 즉시항고 제기 권한을 보유한 피의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년 형제601호의 원처분 검찰청 검사는, 2021. 11. 23.자로, “이 사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지방법원의 2018. 9. 3.자 재심개시결정 및 2019. 8. 21.자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각하한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원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제2204호 사건을 담당할 검사 또한 동일한 취지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처분 검사 등의 불기소 결정은 그 근거가 되는 불기소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도 않았으며, 실제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면밀히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3. 항고기각 결정의 문제점

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의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1 판결 등 참조).

원처분 검사 등 또한 동일한 취지에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행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등 참조)는 것을 전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객관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검사 지휘·감독권에 따른 ‘즉시항고’를 제기할 의무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검찰청법 제4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직무와 권한이 있으며(검찰청법 제4조 제1항),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검사가 객관의무에 따라 법원에 법령에 따른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것을 해태하고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지휘·감독할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본 사안의 경우,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제심결정 및 제주지방법원 2019코8 내지 25 형사보상 결정에 따라 오○○ 등 18인과 같은 특정인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거액의 예산을 받아 형사보상금액이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국가재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국민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낭비되지 않도록 엄중한 심사를 거쳐 집행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4)5)

4) 국가재정법 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에 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00조(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2018. 9. 3.경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이 내려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 420조 및 제421조의 재심사유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었던 사안이고, ② 후속적으로 2019. 8. 21.경 위 오○○ 등 18인에 대해 같은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제주지방법원 2019코8 내지 25)이 내려진 사안에서는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는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졌다는 점과 그 보상금액도 과도한 일급(日給)을 적용함으로써 국고에 거액의 손실을 주는 형사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을 형사보상법 제20조 제1항의 즉시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었던 사안이며, 만일 위 각 즉시항고가 제때 이뤄졌다고 한다면 거액의 형사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거액의 형사보상 관련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위 ①, ② 두 사안에 대해 법률상으로는 ‘즉시항고’ 제기권한은 일반국민이 아닌,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었으며, ‘법무부장관’은 (형사보상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사에게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들 피의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

5) 특히, 2020. 8. 27. 법률신문 기사 「형사보상금 예산도 매년 부족...다른 사업비 전용」에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지난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25억원을 포함해 3조7796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법무부에 대해 ‘매년 연례적으로 부족한 형사보상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이·전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왔다. 지난해 형사보상 사업 예산은 당초 332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법무부가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다른 15개 사업 예산에서 69억원을 끌어다 썼다는 이유에서다. 형사보상금 예산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최근 5년 동안 2015년 264.9%, 2016년 127.1%, 2017년 131.1%, 2018년 110.6%, 지난해 120.9%로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기존에는 예비비를 끌어다 부족한 부분을 채웠지만, 2018년부터는 예비비를 쓰지 않는 대신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형사보상에 관한 재원으로 법무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편성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809>)

하지 않았습니다.

**다. ‘2018. 9. 3.자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무유기**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성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에서는, ①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②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③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④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⑤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⑥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⑦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열거된 사유 및 ⑧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공소수행의 담당자의 지위에 있기 때

문에,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여야 할 의무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당사자인 오○○ 등 18인이 주장한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제421조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제5호를 비롯한 어떠한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주지방법원의 잘못된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소수행의 담당자인 검사가 ‘즉시항고’를 통해 다룰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피의자 성명불상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피고발인 박상기 또한 제주 4.3사건 재심개시 결정과 같은 초유의 관심 사안이 되는 내용은 응당 법무부장관에 보고가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주지방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당시 공소수행의 담당검사인 피의자 성명불상자에게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할 것 등을 지시하는 조치가 있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할 정도로 직무유기 하였습니다.

라. ‘2019. 8. 21. 형사보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무유기

1) 형사보상요건 일반

‘형사보상’이란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써, 형사보상법에는 형사보상의 요건과 절차 및 그 내

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사보상법이 준용됩니다(형사보상법 제28조 제2항).

형사보상은, i)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가, ii)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iii)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청구자가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거나 유죄판결을 자초한 경우 또는 중국적으로 유죄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는데, 보상청구자가 ① 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2조, 제4조, 제26조6)].

- 6)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6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

이러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 등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⁷⁾ 참조), 위 법원의 보상결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14조, 제20조 참조)⁸⁾⁹⁾.

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약칭: 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2.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3.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4.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5.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제2조(보상의 한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 형사보상법)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① 보상청구는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②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即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9) 참고로 판례는 과거 구 형사보상법[법률 제10698호, 2011. 5. 23. 전부개정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전] 제19조 제1항에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도, 원칙상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나, 다만 보상결정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2) 오○○ 등 18인에 대한 재심재판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이 사건 형사보상의 전제가 되는 제주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재고합4 재심판결에서, 위 오○○ 등18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실질적으로 구 형법[1948. 3. 20. 군정법령 제176호로 개정되어 1948. 4. 1. 시행된 조선형사령에 의해 의용된 일본 형법(1941년 법 제61호)을 말한다] 제77조 제1항 및 구 국방경비법 제32조의 추상적 구성요건들을 그대로 이기한 정도에 불과하거나, 또는 검사가 재심공판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신문 내지 제주4·3 사건의 진행 경위나 당시 상황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이를 추단하여 재구성하며,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얻은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군·경의 질문 내용 내지 일부 위 구성요건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을 공소사실의 일부로 삽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여전히 피고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심대상판결을 받기에 이른 것이라고 단언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나아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 국방경비법 제65조에서 정한

이 있을 때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5. 5. 18. 선고 65다532 판결).

‘예심조사’ 및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소장 등본의 송달’을 통한 기소사실의 통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 재심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논리는, 기록의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특정 및 입증의 책임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소추권을 행사하는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i) 원래의 공소사실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멸실된 공소사실 내용을) 재심공판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신문 내지 제주 4.3사건의 진행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이를 추단하여 재구성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ii) 피고인들에 대한 “죄과: (구)형법 제77조 위반, 범죄사실: 내란죄”, “죄과:(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위반, 범죄사실 :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급간첩죄”와 같은 죄목으로 **군법회의의 심판에 회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① 재심판결대상의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공소사실은 그 자체가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의 부존재로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보는 것은 논리칙에 반한다는 점, ② 소실되어 부존재하는 수사기록 등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현재의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물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법리상 판단하는 것은 논리모순으로 법리오해가 있다는 점, ③ 70년도 더 지난 재심사건에서 수형자 등의 진술이 상당부분 왜곡되고 허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위 수형자 등의 진술만으로 그 공소제기절차 등의 위법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에 해당하는지 조차도 의문인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죄판결’입니다. 이러한 무죄판결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 ②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경우를 의미¹⁰⁾¹¹⁾하며, ③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무죄’판결이 아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죄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형사보상의 심리과정에서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면소 또는 공소시각의 재판을 받은 자를 모두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의미도 아니

10)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11) 판례는 형사보상에 있어서 ‘무죄재판을 받은’ 사안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급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급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일부확대 해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3. 22.자 2006코17 결정 참조)

기에¹²⁾ 그 실제 관계를 검토해 볼 때 위 ①, ②에 준하여 무죄의 판결이 내려질 만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7재고합4 재심판결에서 내려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아닐뿐더러,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보상법’ 어디에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의 공소기각 판결’이 ‘무죄판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 제주지방법원에서 “해당 피고인들의 죄명과 적용법조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공소장이나 소송기록 내지 판결문 등 피고인들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로 군법회의에 이르게 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사에 의하여 복원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공소시각 판결을 내려졌던 것은, 현재는 기록 자체가 멸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추권을 가진 검사가 위 오○○ 등 18인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거나, (멸실된 기록에는 관련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법회의의 심판에 회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현재에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지, 실제적인 진실에 반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① 위 오○○ 등 18인에 대하여, 단기 4281(1948)년 12월부터 단기4282(1949) 7월경까지 제주도 내에 설치된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앞에서 살펴본 [표1]에서

12) 김용우, 형사보상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11-12면 참조

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수형인명부에 구체적인 죄명 및 적용법조 ((구)형법 제77조 위반,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② 위 수형인명부에 따라 위 오오 등 18인의 피고인들이 국방경비법위반, 형법의 위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범죄로 그 형이 집행된 것은, 증거에 의하여 판결¹³⁾로 뒤엎어지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이는 위 ‘4. 제주 4.3 사건의 법적 의미’에서 본 바와 같이 동 사건에 가담하였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되는 엄중한 처벌대상인 행위라는 점,

③ 우리나라에서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형사소송법’이 제정되었고(시행 1954. 5. 30.),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8조¹⁴⁾에 따라 1954. 5. 30.이전 경까지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구법’인 일본 형사소송법(소화23(1948)년 법률제131호)에는 아래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안들에 대해서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는 점¹⁵⁾ 등에 비춰보면, 과연 위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13) 확정된 판결을 취소하려면 재심사건에서 위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법원의 정당한 법률 집행을 청구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항소, 상고를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담당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14) 구 (제정)형사소송법[시행 1954. 5. 30.][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정]
부칙<법률 제341호, 1954. 9. 23.>

제1조 본법 시행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는 구법을 적용한다.

제8조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된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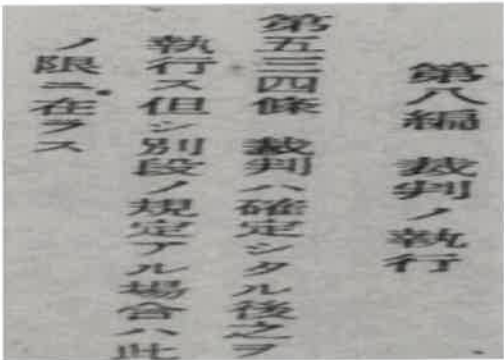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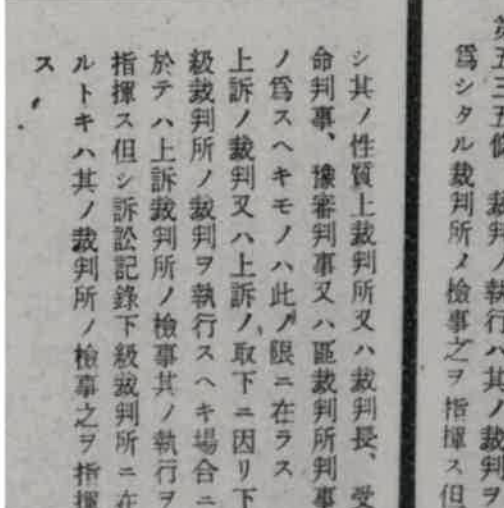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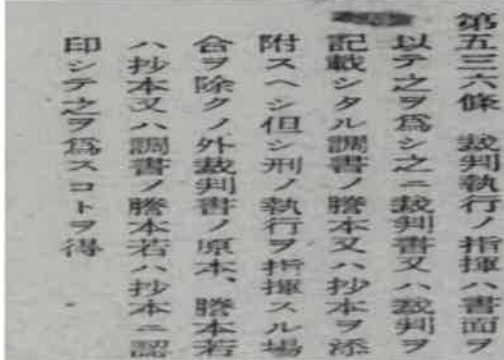
1. 조선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구 조선형사령[시행 1912. 4. 1.][조선총독부령 제11호, 1912. 3. 18. 제정]

제1조 형사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다.

1. 형법
2. 형법시행법
10. 형사소송법

15) 대정2(1912)년에 제정된 일본 구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콜렉션 (<https://dl.ndl.go.jp/info:ndljp/pid/1459294/42>) 자료 참조, 소화23(1948)년에 제정된 신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자료 참조

<p>大正二年五月五日法律第七十五号 (旧)刑事訴訟法</p>  <p>第八編 裁判ノ執行 第五三四條 裁判ハ確定シタル後之ヲ執行ス但シ別段ノ規定アル場合ハ此ノ限ニ在ラス</p>	<p>대정2(1912)년5월5일 법률 제75호 (구)형사소송법</p> <p>제8편 재판의 집행 제534조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한다. 단, 특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의한다.</p>
 <p>第五三五條 裁判ノ執行ハ其ノ裁判ヲ爲シタル裁判所ノ檢事之ヲ指揮ス但シ其ノ性質上裁判所又ハ裁判長、受命裁判事、豫審裁判事又ハ區裁判所判事ノ爲スヘキモノハ此ノ限ニ在ラス 上訴ノ裁判又ハ上訴ノ取下ニ因リ下級裁判所ノ裁判ヲ執行スヘキ場合ニ於テハ上訴裁判所ノ檢事其ノ執行ヲ指揮ス但シ訴訟記録下級裁判所ニ在ルトキハ其ノ裁判所ノ檢事之ヲ指揮ス</p>	<p>제535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행한 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 단, 그 성질상 재판소 또는 재판장, 수명판사, 예심판사 또는 구(관할) 재판소판사가 행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의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에 따른 하급심재판소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소 재판소의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 하급심재판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의 검사를 지휘한다.</p>
 <p>第五三六條 裁判執行ノ指揮ハ書面ヲ以テ之ヲ爲シ之ニ裁判書又ハ裁判ヲ記載シタル調書ノ謄本又ハ抄本ヲ添付スヘシ但シ刑ノ執行ヲ指揮スル場合ヲ除ク外裁判書ノ原本、謄本若ハ抄本又ハ調書ノ謄本若ハ抄本ニ認印シテ之ヲ爲スコトヲ得</p>	<p>제536조 재판집행의 지휘는 서면으로써 행하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록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이외 재판서의 원본, 등본 내지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 내지 초본에 인인(확인)이 되어있는 대로 행한 것으로 한다.</p>
<p>昭和二十三年法律第三百三十一号 刑事訴訟法</p> <p>第七編 裁判の執行</p>	<p>소화23(1948)년 법률 제131호 형사소송법</p> <p>제7편 재판의 집행</p>

의 재판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였는지 조차도 불분명한 사안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오oo 등 18인의 재심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보 상법상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님에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2019코8 내

<p>第四百七十一条 裁判は、この法律に特別の定めのある場合を除いては、確定した後これを執行する。</p> <p>第四百七十二條 裁判の執行は、その裁判をした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但し、第七十条第一項但書の場合、第八十条第一項但書の場合その他その性質上裁判所又は裁判官が指揮すべき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p> <p>○2 上訴の裁判又は上訴の取下により下級の裁判所の裁判を執行する場合には、上訴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但し、訴訟記録が下級の裁判所又はその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に在るときは、その裁判所に対応する検察庁の検察官が、これを指揮する。</p> <p>第四百七十三条 裁判の執行の指揮は、書面でこれをし、これに裁判書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又は抄本を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刑の執行を指揮する場合を除いては、裁判書の原本、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裁判を記載した調書の謄本若しくは抄本に認印して、これをすることができる。</p> <p>第四百八十七条 収容状には、刑の言渡しを受けた者の氏名、住居、年齢、刑名、刑期その他収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検察官又は司法警察員が、これに記名押印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第四百八十八条 収容状は、勾引状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p> <p>第四百八十九条 収容状の執行については、勾引状の執行に関する規定を準用する。</p> <p>附 則 この法律は、昭和二十四年一月一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p>	<p>제471조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된 후 이를 집행한다.</p> <p>제472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다만, 제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및 그 밖에 성질상 재판소 또는 재판관이 지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에 의하여 하급 재판소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소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 재판소 또는 그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재판소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찰관이 이를 지휘한다.</p> <p>제473조 재판의 집행의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여기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 및 초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에 인인(확인)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p>제487조 수용장에는 형을 선고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p> <p>제488조 수용장은 구인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p>제489조 수용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구인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부칙 이 법률은 소화24(1949)년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p>
--	---

지 2019코25에 이르는 형사보상청구 인용결정을 해 버린 잘못이 있었 습니다.

3) 오오 등 18인에게 내려진 과도한 형사보상 결정금액

현행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에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최저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 언상 대상 판결의 원인이 되는 연도의 일급(日給)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을 산정했어야 함이 옳다고 볼 것이며, 형사보상은 유죄판결에 의 한 ‘구금’의 집행에 대한 보상이므로, 법리상 구금된 당시의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이 사건 위 오오 등 18인에 대한 형사보상이 이뤄진 다고 한다면, 위 오오 등 18인의 수형기록이 있는 ‘단기 4281(1948) 년 12월부터 단기4282(1949) 7월경’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 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가능하다면 위 구금이 집행된 당시(위 오오 등 18인의 각 구금의 시작점인 1948~1949년도 등)의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자료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되었어야 합니다.¹⁶⁾

16)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한다면, 1958. 8. 13.제정된 구 형사소송법(법률 제494호) 부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이 들 오오 등 18인이 구금되었던 시기에 적용되던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의용되던 일본형사소송법 1950. 1. 1. 일본 형사소송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던 “1일 6백환이상 3백환이하”의 금액을 일급(日給)으로 보고, 위 화 폐가치를 이 사건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진 2019년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600환은 12,003원, 1,300환은 26,005원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형사보상법의 문언, 과거 평균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형사보상에 있어서도 ‘일급(日給)’을 최소한 예컨대 ‘12,003원 ~ 26,005원’ 사이에서 아니면 각 그 집행된 구금 당시 최저임금을 확인하여 그 기준으로 산정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위 오오 등 18인에 대해 모두 2019년 현재에 와서 구금된 것으로 의제하여, 2019년도 최저임금인 66,800원에 5배를 곱한 334,000원을 일급(日給)으로 산정해 버린 중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4) 소결 - 피의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재수사 지휘의 필요성

오오 등 18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은, 형사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설사 형사보상을 하더라도 과도한 형사보상 금액이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어야 할 당시 공소 수행의 담당 검사였던 피의자 성명불상자는 형사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피고 발인 박상기 또한 위와 같은 거액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재부에 거액의 형사보상관련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형사보상 관련 예산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에게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률상 책무를 위반한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이러한 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 원처분 검사 등은 엄격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여 버렸습니다.

4. 결론

이와 같이 잘못된 재심개시결정 및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충실한 수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시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사건 원처분 검사 등은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만 내릴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면밀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 불기소처분에 따른 이유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엄정한 피의자들의 중차대한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재수사를 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첨부서류

1. 항고기각이유고지

1부

2022. 1.

재항고인(고발인)들의 고발대리인

1. 범무법인(유한)해송

담당변호사 권 오 현



2. 변호사 배 보 윤



대검찰청 귀중

2022.01.24



문서확인번호 2164-3006-1163-9500

발행번호 2-200-2022-9851

서울고등검찰청

(전화번호 130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22. 1. 24.

수 신 법무법인 해송

발 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제 목 항고기각이유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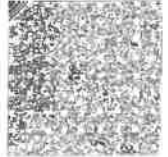
귀하가 청구한 항고기각(각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고등검찰청 2021 고불항 제2204호	
② 항 고 인 성 명	이선교	
피 항 고 인	③ 성 명	박상기
	④ 주민등록번호	생략
⑤ 죄 명	가.직무유기	
처 분	⑥ 년 월 일	2022. 1. 19.
	⑦ 요 지	가.항고기각

별지첨부

첨부서류 /





문서확인번호 2164-3006-1163-9500

발행번호 2-200-2022-9851

서울고등검찰청
(전화번호 130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22. 1. 24.

수 신 법무법인 해송

발 신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제 목 항고기각이유고지

귀하가 청구한 항고기각(각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고등검찰청 2021 고불항 제2204호
② 항 고 인 성 명		이선교
피 항 고 인	③ 성 명	성명불상
	④ 주민등록번호	생략
⑤ 죄 명		가.직무유기
처 분	⑥ 년 월 일	2022. 1. 19.
	⑦ 요 지	가.항고기각

별지첨부





수원고등검찰청 결 정

사 건 2021 고불항 제 2204 호

피 항 고 인 1. 박상기
2. 성명불상

항 고 인 1. 이선교
2. 전민정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1 형제 601 호

죄 명 직무유기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하고, 항고청 담당검사가 새로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년 01월 19일

수원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김영태

